

---

---

# 「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정 관련 보고

---

---

2005. 9

## — < 목 차 > —

I. 추진 경 위 .....	1
II. 필 요 성 .....	1
III. 법안 주요내용 .....	2
① 적용대상 및 요건 .....	2
② 순직공무원 유족에 대한 보상방안 .....	2
IV. 소요재원 및 재원부담 주체 .....	5
V. 「순직보상심사위원회」 구성 .....	6
VI. 향후 추진 일정 .....	6

## I. 추진경위

- '04.9.13. 및 '04.10.18. 대통령님께서 경찰·소방 등 항상 위험에 노출되는 공무원들의 사망 등에 대한 보상대책을 만들 것을 지시
- '04. 11. 강창일의원이 소방공무원, 이인기위원이 경찰공무원 순직시 군인과 같은 보상체계를 적용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발의
  - '04.11.30.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소위시 위험업무종사자에 대한 보상 방안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키로 합의
- 행정자치부에서 「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안」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협의·입법예고 등을 거쳐 법안 마련

## II. 필요성

- 경찰·소방공무원 등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
  -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범인 체포, 범죄예방, 화재진압, 인명구조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헌신적 행위 중 사망할 위험이 높아
  - 직무위험도에 따른 차별보상이 필요함에도 일반 공무상 사망과 같은 보상을 받음.
- 위험직무 수행중 순직자는 대부분 젊은 공무원인데 공무원연금법은 재직기간 20년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, 유족들은 대부분 많지 않은 일시금만을 받게 되어 실질적인 생계보장에 미흡

### Ⅲ. 법안 주요내용

#### ① 적용대상 및 요건

##### 가. 적용대상

-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한 헌신적 행위 도중 사망한 공무원

##### 나. 적용요건

-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직무 수행 중 위해를 입어 사망하거나,
- 재난·재해현장에서 화재진압 또는 인명구조 행위를 수행하던 중 위해를 입어 사망하는 경우로 한정

#### ② 순직공무원 유족에 대한 보상방안

##### 가. 현행 경찰과 군인의 순직(전사)시 유족에 대한 보상액 비교

(단위 : 천원)

구분	계급	보수월액	유족급여		유족보상금	비고
			일시금	연금		
5년 재직	순경	1,125	8,438	-	40,502	
	하사	979	-	539/월	184,867	유족 일시금 미지급
20년 재직	경감	2,610	(78,692)	914 <sup>1)</sup> /월	93,960	( )는 일시금 선택시이며, 이 경우 연금은 미지급
	준위	2,684	-	1,476 <sup>2)</sup> /월	184,867	유족 일시금 미지급

註 1. 경찰 유족연금 : 당해 공무원 퇴직전 3년 평균 보수월액의 50%(퇴직연금)의 70%(35%)

2. 군인 유족연금 : 당해 군인 사망당시 보수월액의 65%(20년 이상)

## 나. 의원입법안 주요내용

- 경찰·소방공무원 순직시(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 포함) 군인의 경우와 유사하게, 유족보상금은 총경(소방정) 10호봉의 72배, 연금은 20년 미만자는 보수월액의 55%, 20년 이상자는 65% 지급

## 다. 유족 보상방안

### (1) 유족에 대한 보상금액 결정시 고려사항

- 경찰·소방 등 위험한 현장업무에 종사하다가 순직하는 공무원의 경우 대부분 연령이 30~40대 전후인 점과 국가재정사정 및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유족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,
- 순직한 공무원의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보상의 핵심은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연금지급에 있음.

### (2) 유족연금

#### ○ 현행 유족연금 현황

- 군인의 경우, 공무상 사망시 당해 군인 보수월액의 55%(20년 미만), 65%(20년 이상) 지급, 이 경우 군인연금법상 유족일시금 미지급
- 일반 공무원의 경우, 공무상 사망여부와 무관하게 퇴직연금 수급자 사망시 유족에게 퇴직연금의 70% 해당액 지급, 공무원연금법상 유족 일시금은 지급

#### ○ 유족연금 신설안

- 군인의 경우와 같이 사망당시 공무원 보수월액 기준으로 20년 미만은 55%, 20년 이상은 65% 지급

### (3) 유족보상금 조정

#### ○ 현행 유족보상금 현황

- 군인의 경우, 전사시 소령 10호봉 보수월액의 72배, 일반 공무상 사망시 당해 군인 보수월액의 36배 지급
- 일반 공무원의 경우 당해 공무원 보수월액의 36배

#### ○ 조정안

- 군인의 전사에 대응되는 대간첩작전 수행 중 위해를 입고 사망한 경찰공무원의 경우 총경 10호봉 보수월액의 72배 지급
- 기타의 경우, 현행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보상금 지급

### (4) 보훈연금과의 병급여부

#### ○ 현행 보훈연금 현황

- 군인, 경찰·소방공무원 등은 공무상 사망시 월 708천원의 보훈연금 수령, 기타 공무원은 보훈연금 미지급
- 군인의 경우 보훈연금과 유족연금을 병급받고 있음.

#### ○ 군인의 경우와 같이 병급

### (5)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일시금 병급여부

- 유족연금을 지급할 경우 유족일시금은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. 군인의 경우도 유족연금 지급시 유족일시금은 지급하지 않음.
-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을 지급함에도 유족일시금까지 병급할 경우 특혜시비 발생 우려

라. 공무원연금법과 신법과의 지급액 비교

구 분	공무원연금법	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	증감액
순 경 3호봉	- 유족연금 없음 - 유족일시금 1.4백만원	- 유족연금 월52만원 - 유족일시금 부지급	- 연금 월 52만원 증액 - 일시금 1.4백만원 감액
경 사 20호봉	- 유족연금 월 76만원 * 유족연금일시금으로 수령시 6,579만원	- 유족연금 월 142만원 - 유족연금일시금 부지급	- 연금 월 66만원 증액

- \* 新法 적용대상자에게는 군인의 경우와 같이
-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연금(또는 일시금)을 지급하지 않으나,
 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지급

IV. 소요재원 및 재원부담 주체

가. 소요재원

- (1) 대상인원 : 연 20명 내외로 추정
- (2) 소요예산

구 분	2006년도	2016년도	2026년도
대상인원	20명	200명	400명
유족연금(A)	2.2억원	34억원	108억원
유족일시금(B)	7.6억원	12억원	20억원
합 계(A-B)	-5.4억원	22억원	88억원

\* 신법상 유족연금 수급자에게는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일시금 부지급

나. 재원부담 주체 :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

## V. 「순직보상심사위원회」 구성

### 가. 필요성

- 신법 적용대상이 되는 순직공무원의 경우 그 적용요건이 일반 공무원 사망과는 다르므로, 일반적인 공무원 사망을 다루는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심의회에서 심사하는 것은 혼란의 소지가 있음.

### 나. 위원회 구성

- 위원회는 법무부, 기획예산처, 국가보훈처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법조계, 의료계 인사 등으로 구성

### 다. 심사대상

- 공무원연금법에 의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설치되어 있는 급여심의 위원회와 같은 법에 의거 행자부에 설치되어 있는 급여재심위원회에서 인정한 공무원 사망자 중 신청자에 한해 심사

## VI. 향후 추진 일정

- 2005.10월 정기국회 제출